

울산지방법원 2021. 3. 30 선고 2020나101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결 2021. 3. 16.

판결 선고 2021. 3. 30.

제 1 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가소746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3. 8.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3.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입금된 돈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9. 3. 10. 인터넷 'F' 사이트의 게시판에서 "골프채를 판매합니다."라는글을 보고, 위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15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골프채(이하 '이 사건
골프채'라 한다)를 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D 등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위 사건을 담당하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는 2019. 8. 20. '피고는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피의자 D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구매대행 대금, 수출관련 대금, 해외직구 관련 대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주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기망당한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는 이 사건 범죄가 용이하도록 사기방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1,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1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다.

나.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1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피고는 D로부터 구매대행,
해외직구 대금의 입금 및 이체 등에 사용된다는 말을 믿고 D에게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돈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업무를 하였을 뿐인 점, ② 피고는 2019. 3.10. 원고로부터 송금된 350,000원 중 340,000원을, 같은 날 원고로부터 송금된 800,000원 중 780,000원을 D가 지정하는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곧바로 이체한 점, 3 원고가 이 사건 골프채를 구매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방은 원고에게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알려 주고, 피고와 같은 이름의 주민등록증을 원고에게 제시하였는데, 위 주민등록증은 피고와 이름만 같고 주민등록번호 등이 다른 타인의 것이었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의 위 골프채 구매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송금으로 인한 이득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원고가 송금한 1,150,000원 중 피고가 30,000원을 공제하고 1,120,000원을 위 G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30,000원은 피고가 D에게 속아 해외직구 관련대금 등으로 알고 송금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D측으로부터 받은 대가로 보이고, 피고에게 위 돈이 편취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돈 30,000원 취득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2다44358, 4436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영, 판사 장성신, 판사 박관형